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 법무부에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대통령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6개월 뒤 본격 출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됩니다.

오늘(6. 2.)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친일 재산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공포일인 오늘(6. 2.)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가칭)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여,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친일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 향후 위원회 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롭게 시작할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	법무실 국가소송과	책임자	송무심의관	강선주 (02-2110-4382)
			과 장	국 진 (02-2110-3202)
			검 사	김다락 (02-2110-4386)
		담당자	사무관	이선민 (02-2110-3211)